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6일,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9.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덕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회원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체육회 회장 등의 결

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u>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3. 각 단체의 정관에 따른 임원</u> <u>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u>
--	---

다. 검토의견

- 현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는 「대한체육회 정관」 등 체육단체 내부 규정에 규율되어 있음.
- 그런데 범죄경력자가 체육단체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규율되어 온 사항이 상향 입법됨으로써 체육단체장의 자격에 대한 강제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대상 단체 범위(안 제34조의2 본문)와 관련하여, 현행 정관상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임에 반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은 ‘정가맹단체’만

인정되므로, 개정안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준가맹단체’·‘인정 단체’(‘정가맹단체’ 아닌 ‘가맹단체’) 및 ‘지회’(‘시·도장애인체육회’)만 제외하는 것은 체육단체간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둘째, 대상자 범위(안 제34조의2 본문)와 관련하여, 체육단체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사항도 본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셋째, 결격사유 항목(안 제34조의2 각호)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단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일부만을 법률에 상향 입법할 경우 결격사유별 법체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모든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넷째, 기타 결격사유의 정관으로의 위임(안 제34조의2제3호)과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결격사유를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다섯째, 현행법 및 개정안에는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에의 범죄경력조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하여, 결격사유 해당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구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 단체 범위를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로 수정, ② 대상자 범위를 ‘회장’에서 ‘임원’으로 확대, ③ 결격사유 세부 항목 삭제, ④ 경찰청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역자치단체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